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 규정

개정 2016. 3. 1

개정 2017. 3. 1

제 1조(명칭) 본 위원회는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및 기능) ① 성희롱·성폭력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사안의 처리 또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희롱 - 성폭력 예방교육과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 성폭력 사건의 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
3. 기타 성희롱 - 성폭력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제 3조(구성) 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 학생서비스센터장, 교학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전임교원 3인, 직원 1인, 학생 2인으로 구성하되,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7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안에 따라 학생위원은 위원회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될 수 있다.(이 경우에는 재적위원을 7인으로 간주한다.)

②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둔다.

③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4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 2조 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안전이 발생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성희롱·성폭력 상담센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성희롱·성폭력 예방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5조(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